

CPR  
프라이버시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96-98년); 전자주민  
카드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  
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인권 자료실		
등록번호	분류	날짜
98 3/3	B4-1	48

48

## 인간 바코드, 전자 개목걸이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Tiger dies,  
Leather remains,  
People dies,  
**The NUMBER Remains**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한국 사람은 죽어서 번호를 남긴다?”

### 우리의 주장

- ◆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 ◆ 후진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 ◆ 불필요하게 등초본 등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라.
- ◆ 안가부, 경찰청 등 공안망의 정보파일을 공개하라.
-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을 제정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당시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전자주민카드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 (02) 778-4001 FAX : 02) 778-4006  
통신 :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참세상 kijoongv  
인터넷 홈페이지 <http://kpd.sing-kr.org/idcard>

---

전자주민카드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인간 바코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11월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사회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거세 심의 유보된 것을 한차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부 정당들이 표결로 강행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제도를 신중한 검토없이 개악처리한데 대하여 우리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정당의 존립 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전자주민카드로 통합되는 증명서를 애초의 7개 증명에서 4개의 증명으로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전자주민카드의 시스템과 전자주민카드에 들어가는 '전자침'의 용량은 당초의 계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증명이 전자주민카드로 통합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이 되면 국가가 소유한 개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기능까지 첨부가 된다면 돈으로 거래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전자화되어 기록됩니다. 결국 개인의 모든 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통합 관리되는, 그야말로 인간바코드를 가슴에 꽂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 전자주민카드는 결코 안전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망 고장율이 선진국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전산망까지 외국의 해커에 의해 침입을 받는 등 시스템의 안전에 있어서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까지 한패가 된 신용카드위조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공무원들 손에 의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한다면 우리 국민이 당해야 하는 피해는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분실했을 때와 시스템장애가 발생했을 때 겪어야 할 불편함을 고려한다면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주민등록제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민등록증조차 없습니다. 지문은 범죄자나 외국인 체류자만 찍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 통합, 전산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선진국형 신분증제도라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이 민주화의 수준이 낮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에 의해서만 추진되어 왔고, 그나마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모두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아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모순과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증명까지도 전산화시켜 통합관리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로 '개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처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얼마전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 인권, 사회 단체도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범실시지역인 제주도 시의회는 전자주민카드관련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런 선거 분위기를 틈타서 졸속으로 처리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비난여론과 저항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인권 자료실		
주제	자료번호	자료내용
98 5/12	04-1	(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 언론위원회

1996. 10. 9.

수신 각 사회단체  
 발신 위원장 안상운  
 제목 전자주민카드저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 I. 전자주민카드란.

- 현행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사항, 인감증명서, 지문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수록한 IC칩 카드
- 사업일정 : 95. 4. 전자주민카드사업 기본계획 확정 / 95. 6. 시범사업 추진(과천시) / 97. 1억 9천만건의 자료구축, 온라인망 구축, 관련제도 정비 / 98. 17세이상 모든 성인 남녀에게 발급 / 99. 전국 실시.
- 경비 : 총2735억원 (전산망 630억원, 카드제작 2100억원, 기타 20억원) / 95년 5억, 96년 478 억, 97년 887억, 98년 1365억원.
- 효용 : ①연간 등초본 1억 7천만통, 인감증명 5천7백만통의 발급업무와 비용 경감, 공무원감 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까지 포함하여 1천억원 규모의 절감효과  
 ②국민편익증대 : 본적지, 동사무소등에 갈 필요없이 무인발급기에서 필요한 증명발 급,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을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음.  
 ③범죄예방, 범조나 위조의 가능성성이 적어 신분확인 등에 있어 주민등록증보다 우월.

## 2. 문제점

### 가. 법적 문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일명 프라이버시권)의 무력화 : 중요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방라되어 있어 이 정보들이 통합되면 더이상 '사생활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음. 이 점에서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통합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함.

■ 법적 근거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통합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산망이나 네트워크로 통합할 때는 그 침해의 위험성때문에 '사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나,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전산망 구축과 발급작업을 시행하려는 단계에서도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문날인문제 : 주민등록증제도에 의하여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특별하게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문제로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으며 기타 선진제국에서는 지문날인은 범죄자에게만 요구되는데, 우리는 전 국민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17세만 되면 날인하고 있음. 안기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전자주민카드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기로 함. 이제 전 국민은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하여 범죄인취급을 받게 되는 문제.

### 나. 사회적 문제

■ 감시와 통제의 강화 : 주소이동사항, 가족변동사항, 신체적 특징의 변동사항, 운전면허 사항에 포함되는 교통법규위반사항, 병원진료사항, 국민연금항목에 포함되는 연금납부내역, 분담금 액, 직업 등이 통합되어 있어,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힘은 무한대로 확장됨.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침해의 가능성은 원자단의 억지력 수준

이라 볼 수 있음(보안체계의 관리를 안기부가 담당함).

■ 행정전산화에 따른 대량실업의 가능성 :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업무나 인감증명의 발급업무, 기타 전자주민카드로 대체되는 민원업무관계자, 주민등록증 납품업체 등. (안전성과 보안문제때문에 전자주민카드로 창출되는 수요는 대기업이 담당함)

#### 다. 기술적인 문제

■ 정보유출과 조작의 문제 : ①크래킹(일반적으로 해킹이라함)에 의한 유출과 조작, ②내부자에 의한 유출과 조작(최고의 보안기술을 자랑하는 미국 국방성과 FBI의 주컴퓨터의 크래킹사례)

■ 기계적인 안전의 문제 : 전산망의 작동불능 가능성의 상존(금융전산망이나 증권전산망의 가동중단에 다른 업무중단, 업무비효율), 전산망 작동불능에 따른 국가관리체제의 마비 가능성, 안전대책은 현재에 가능한 기술수준에 불과하므로 미래(아주 가까운 미래임)에는 새로운 침해기술이 개발되게 됨.

#### 3. 대응방법의 문제

가. 정부쪽의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일천한 상태임.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제의 시행으로 발생할 국민들의 권리침해는 심각하다 할 것임.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의 시행을 막는 것이 필요하나 정부의 입장은 완고하고 전자주민카드제의 효용성에 눈이 먼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전망됨.

나. 따라서 전자주민카드만을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여러 시민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공대위를 주체로 하는 여러 활동이 당장 필요한 상태임.

다. 활동의 방향은 우선 전자주민카드의 위협성을 알리고 여론을 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회의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전자주민카드에 관하여 적극 논의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며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정도를 예정할 수 있음.

라. 운동방향의 문제(실지저지인가, 보완책마련인가) : 프라이버시권 자체를 협해화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폐해가 악강하다는 점, 상시적인 감시 통제망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접근권보장, 안전대책 강구 등의 보완책만으로는 전자주민카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실시저지를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나, 더불어 시행상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여 보완책도 함께 마련함.

#### 4.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가. 대상 : (무순임)민교협, 과학기술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언노련, 한통노조, 과천시민의 모임(과천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함) 등

나. 현재까지 민변 언론위원회와 청년정보문화센타, 지식인연대, 정보연대 씽, 참여연대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단체임. 이 모임에서 일단 국회 내무위 소속 의원에게 관련

된 자료를 내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목록을 발송하였으며,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음.

### 5. 공대위 구성단체들의 의무

가. 각 단체의 중견급 소속원으로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가능하면 각 단체에서 1인씩 실무자 파견).

나. 비용분담 : 토론회 개최비용(장소대여료, 발표문 복사료, 안내문 제작 및 발송료 등), 실무자 활동비 등

다. 일단 현재의 참여단체와 참여실무자, 즉 참여연대, 지식연연대, 정보연대, 청년정보문화센타, 민변의 활동가로 실무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자 파견문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님.

라. 따라서 참여여부와 참여할 경우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소속원 이름을 알려 주시고, 실무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10. 1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4. 청년정보문화센타  
12시. 시내버스 브로드웨이역 756번 버스 stop 223번. 5/6 - 1542 ~ .

6. 회신할 곳 : 민변 사무국(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E-MAIL : M321(천리안))

담당자 : 변호사 김기중, 간사 변우성

\* 참고 : 이 문서의 명의는 민변 언론위원회이나 공대위에는 민변이 참여하는 것임.

# 보 도 자 료

인권자료실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일
198 5/12	134-1	38

## (가칭)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OC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기독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 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가칭)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실무담당 : 청년정보문화센터 김영석(516-1542) 참여연대 이셋별(796-8364)  
정보연대 쟁 김지호(816-1913), 지식인연대 흥석만(879-0871)

제 목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요구

날짜 1996. 10. 19. (총 3 쪽)

###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요구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95년 4월부터 7개분야(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감, 지문) 41개 항목을 포함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분증 제도를 확립이라는 내무부의 발표 외는 달리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보안시스템을 안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가칭)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전면 철회하기 위한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 - 공동대책 위원회 성명서)
5. 공대위는 11월 2일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사회단체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적 합의와 법적 근거 없이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도입 전면 철회와 궁공기관시설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

&lt; 별첨 - 공동대책위원회 설명서 &gt;

#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도입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가칭)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가 총경비 2,735억원을 들여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98년 반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주민 카드제도는 법적 근거의 미비라는 문제점과 국민 개개인의 대부분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통합되어 있어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첫째,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은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시존과 사건,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리자에 의한 연금 가입자 정보 유출 사례,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사례가 93년 한해 동안만 292만건에 이를 정도로 '개인정보 누출'은 사회문제화 되어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과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산망과 네트워크로 통합한다면 제2, 제3의 시존과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재산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개인의 원적지와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정치적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향후 전자주민카드는 금융·자산 정보를 포함할 계획까지 검토되고 있어 카드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도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생기게 될 문제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둘째, 전자주민카드 제도 추진은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 시행을 현행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삼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예정인 7개 분야(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 운전면허, 국민연금, 인감, 지문) 41개 항목은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명 체계이므로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 셋째, 보안 시스템을 안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95년 안기부의 보안 감사 파문에서 드러나듯이 공안 기관의 국민에 대한 감찰 시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下에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안기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기증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안기부의 대공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주민카드가 21세기형 국민감시체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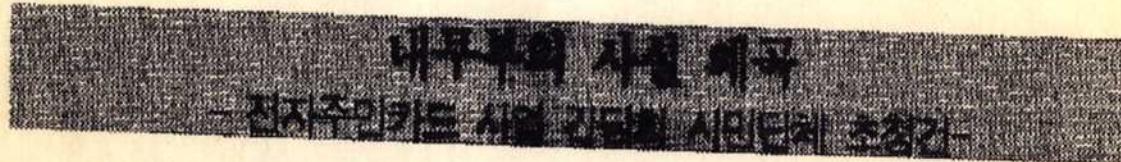
# 보 도 자 료

인권 카드		
등록일	기록일	번호
'98 5/12	94-1	35

##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회사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와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 SW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진균(서울대사회학·지식인연대 대표), 김창국(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 실무담당 : 민변 김기중변호사(567-2316), 청년정보문화센터 김형석(516-1542)  
**제 목** 내무부의 사실 왜곡 - 전자주민카드사업 간담회 시민단체 초청건  
**날 짜** 1996. 10. 30. (총 6 쪽)



### 통합전자주민카드 공동대책위, 내무부의 사실 왜곡에 항의

1. 오늘(30일) 오후 2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내무부는 사전에 시민단체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시민단체들이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가 간담회가 되었다는 말을 윤운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듯 설명했다.
2. 그러나 내무부는 지난 26일(토) 내무부장관의 명의로 시민단체, 언론사, 관련 기관 등에 '전자주민카드사업 간담회 초청' 공문은 발송하였으나 사전에 시민단체 대표 인사만을 요청하였을 뿐, 토론회 참석은 요청한 바가 없다.
3. 대책위 측은 내무부가 요청한 간담회의 시일이 너무 축박하고 26일 발송된 공문의 행사진 행시간표에는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만 계획되어 있었고 대책위측의 입장 발표 시간은 주어지지 않은채 대표 인사 등 형식적인 모양만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였고 11월 2일에 개최할 예정인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의 준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대책위에서 참석하지 않자 내무부는 오늘(30일) 아침 공문번호와 발송일시도 기입되지 않은 폭넓은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오늘 아침 급조된 안내문에서 달라진 점은 정부입장발표를 몇가지 빼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15분 배정했다는 것이다.
5. 내무부는 여기에 한층 더해 내무부 출입기자들에게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데 시민단체들이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마치 공동토론회가 처음부터 기획되었던 것처럼 만들고 있다.
6.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내무부의 사실왜곡이 시정되기를 바라며, 이후 진정한 대화의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1. 26일 내무부 발송 공문 '전자주민카드사업 간담회 초청'(3~4쪽)  
2. 30일 내무부 안내문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 토론회 개최'(5~6쪽)

02P11112296 137 P02

〈제1회 10월 내부 발송 금문 '전자주민카드사업 간담회 초청'

## 내부부

우110-760/서울종로구세종로 77 종합청사 1306호/전화731-2330/전송731-2336 차승관  
문서번호 주민 13210-615

시행일자 '96. 10. 24 (3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 제 목 전자주민카드사업 간담회 초청

국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98년까지 추진계획인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6. 10. 30(수) 15:00 ~ 17:30

○ 장 소 : 과천시민회관소강당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대 상 : 200여명

·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등

○ 주요내용

- ◆ ( ·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사항  
· 전자주민카드 전산망 및 카드보안  
· 질의·응답

번 첨 : 전자주민카드사업 간담회 행사시간표 각 1 부. 끝.

## 내부부장



수신처 : 시민단체, 언론단체(일간신문, 방송사), 민관부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국통신원장, 삼성미래기술원장, 한국정보통신부상, (주)미디어통신장

## □ 행사진행 시간표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	(분) 개 회	주민등록남당	
15:00 ~ 15:05	5 국 민 의례	"	애국가 제창
15:05 ~ 15:10	5 소 개 환계 인사 - 시민단체등 참석자 대표 (11개 단체)	"	
15:10 ~ 15:20	10 인 사		
15:20 ~ 15:30	10 추진경과 보고	주민등록남당	OHP상영
15:30 ~ 15:45	15 전자주민카드 도입취지	장영환 시부관	추진기획단
15:45 ~ 16:00	15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	"
16:00 ~ 16:15	15 전자주민카드 전산망보안	상명대 최종우 교수	
16:15 ~ 16:30	15 전자카드의 보안	김평조박사	
16:30 ~ 16:45	15 전자주민카드 운영시연 (업무별)	관련기관	
16:45 ~ 17:30	45 질의 · 응답	주민등록남당	
17:30	폐 회	주민파장	

0-30 15:25 WED FROM:PSPD,KOREA

10-30 0:08 WED FROM:

82-2-793-4745

7312336

TO:450082111020002

TO:82 2 793 4745

PAGE:05

PAGE:01

## <별첨 2> 30일 내무부 안내문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 토론회 개최'

###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공동 토론회 개최

신시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사개요

(1) 일 시 : '96. 10. 30(수) 15:00 ~ 18:00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3) 초청대상 : 300여명

-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 20명
-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50명
- 내무부, 시도, 시군구 등 관계 공무원 230명

(4) 행사내용

- 사업추진경과 보고(내무부)
-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주요쟁점사항 의견(내무부)
- ★ 시민단체 의견 발표
  - 전자주민카드 선산망보안(상명내하고 최종우 교류)
  - 전자카드의 보안성(전자통신연구소 김필구 박사)
- 토 룬

#### 2 | 공후계획

- 시민단체 의견 및 지적사항은 검토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
- 양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여론 최대화 수립

### [행사진행시간]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	(부) 개 회	박 성 호 서 기관	내부부
15:00 ~ 15:05	5 국 민 의례	"	
15:05 ~ 15:10	소 개 관계 인사 시민단체등(11개 단체)	"	
15:10 ~ 15:20	10 인 사		
15:20 ~ 15:35	15 추진경과 보고	박 성 호 서 기관	
15:35 ~ 15:50	15 전자주민카드 추진 필요성 및 주요쟁점사항 의견	장 영환 사무관	내부부
15:50 ~ 16:05	15 시민단체 의견		
16:05 ~ 16:20	15 전자주민카드 전산망보안	최종우 교수 성명대학교	
16:20 ~ 16:35	15 전자카드의 보안	김珉준마사 연 교수	전자통신 연 교수
16:35 ~ 17:45	70 토 룬		
17:45	폐 회	박 성 호 서 기관	내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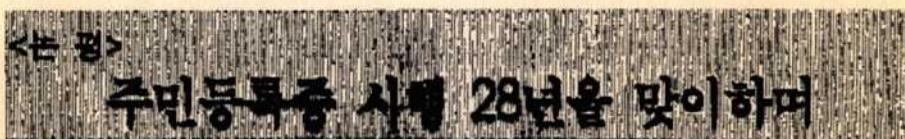
# 보도자료

이전 자료실	
등록일	번호
198 5/12	B4-1
	36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파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 사회단체  
발 신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실무담당 : 김기중 변호사(567-2316)  
제 목 <논평> 주민등록증 시행 28년을 맞이하며  
날 째 1996. 11. 20. (총 2쪽)



1962. 5. 10.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1968. 5. 29.의 1차 개정에 따라 1968. 11. 21.부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1996. 11. 21.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된지 꼭 28년이 되는 날이다.

전자주민카드 공대위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주민등록증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시행되어 온 주민등록증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6·25 전쟁 직후 국내질서가 혼란하고 북한에서 남하한 많은 동포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사회적 배경에서 '남한내의 반국가적 불순분자를 색출, 제거하고 시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에 뿐만 아니라 시민증과 도민증을 국가차원에서 통합시킨 제도이다. 즉 주민등록제도는 시민증과 도민증의 발급목적과 동일한 목적, 즉 반국가적 불순분자를 색출, 제거하기 위하여 입안된 제도라는 점, 하지만 당시 사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내포한 채 현재까지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제도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소이동사항, 가족사항 등을 국가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비밀로 남겨두는 것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사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17세이상의 모든 국민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일정한 행정기관에 제시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헌법이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을 허황되게 만드는 것으로 시행당시에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되었어야 했다.

공적부분이든 사적부분이든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서 국민의 신분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연공서열제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장유유서의 전통을 가진 우리의 현실에서 갖는 '나이'의 의미와 혼역병, 단기사병, 군입대면제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다른 우리의 현실에서 신분확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개인의 나이와 병적관계가 강제로 드러나도록 하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적인 특색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한 지역적인 특색에 따른 차별론이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출생지를 강제로 밝히도록 하는 것 또한 어떤 개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싶을 정도로 알리기 쉬운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그 출신지역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을 제정할 당시인 1962년에도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체택되지 않고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법률 제1067호), 1968.

5. 29.의 1차 개정때 주민등록증 발급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때에도 그 발급여부는 '발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하여 발급을 강제하지는 않았다(법률 제2016호). 그런데 이후〈1970. 1. 1.의 2차 개정(그즈음 북한무장공비사건이 발생하였다)때 단순히 거주관계 파악목적이 아니라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 위하여'(법률 제2150호 개정이유중에서) 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제시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 이 제도가 현재까지 계속 강화되어 온 것이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폐해가 분명한데도,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당시 수인증증명을 소지아도록 명령하고 있다(제11조 제8항), 국가기밀이나 시정사시면제는 물론이고 사회단체, 일반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소 성명 등 외 확인을 필요로 할 때 주민등록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의 9), 사법경찰관리는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 하나 그 제시를 거부하는 자를 인근 관계관서에 동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17조의 10), 비록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하위법에 의하여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며,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험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행정목적상 주민등록을 강제하는 제도가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지금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발급하고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는 불필요하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 중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생년월일, 출생지, 병역관계 등은 삭제되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는 새로운 신분확인제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끝.

등록일	등기호	자료번호
'98 5/12	B4-1	37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과학부·뉴미디어부 기자

발 신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담당 : 민변 김기중 변호사(567-2316), 지식인연대 흥석만 간사(879-0871)>

제 목 :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주민등록법의 규율 대상일 수 없다.

날 째 : 1997년 3월 21일 (총 5 쪽)

### 보 도 자 료

####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주민등록법의 규율대상일 수 없다**

#### **통합전자주민카드 대책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무부에 발송**

1.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 김진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식인연대 대표), 김창국(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월 7일 내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3월 21일 발송하였다.
2. 대책위는 내무부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증명과 정보의 통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본 때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두를 연결하여 주는 유무선의 통신망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국가전산시스템이라는 점 만으로도 주민등록법의 규율대상될 수 없으며 한 개인의 개인적 사항이 대부분 수록되므로 분실·도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과 위험은 현재 종이증명 체계와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설사 일정한 국민적 토론과정 또는 국회에서의 깊은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전산망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장치, 전자주민카드 고유의 기술적 문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자격조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별도의 통합입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여러가지 입법적인 미비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거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한영씨 주소유출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며 이는 주민들의 주 거확인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정보를 수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 위 법령에 반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든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도입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위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내무부는 지난 3. 7.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한 내용은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변경하고, 주민카드의 발급 및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항목의 수록근거를 규정하며, 주민카드 열람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주민카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주민카드 악용자의 벌칙을 강화함」이라고 한 부분이 전부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위 내용대로라면 주민등록법의 개정내용은 단순히 전자주민카드의 발급근거와 카드에 수록할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 2.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의 변형이 아니다.

가. 먼저, 위 입법예고안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종이와 비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IC칩을 내장한 PVC재질의 카드로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증명의 통합과 정보의 통합을 가져오며, 시스템측면에서 볼 때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수만 대의 단말기 그리고 3,400만여개의 전자주민카드와 이 모두를 연결하여 주는 유무선의 통신망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국가전산시스템이다. 이 점만으로도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주민등록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나. 기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등 4개의 신분 또는 자격증명이 통합되는 전자주민카드는 이를 운전면허증이라 할 수도 없고, 의료보험증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순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신분증명서나 자격증명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증명서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각각의 증명서는 그 발급목적과 사용처가 달라 공통점이 전혀 없다. 국가적 신분확인제도인 주민등록증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반제도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행위의 위험성때문에 국가가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 주는 일종의 자격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벌이나 형사처벌과 관련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자격증이며, 의료보험증과 국민연금증서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신분확인만이 필요한 자리에서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의 제시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거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

분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각 제도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의 제시의무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강제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이러한 주민등록증 제시의무도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한하여 면허증의 제시의무가 있을 뿐이다(도로교통법 제77조). 따라서 지금의 헌법과 법률체계에서는 각 증명서를 통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만약 다른 제도적 목적에 의하여 증명의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사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의 통합이 갖는 법률체계상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카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단순히 증명만을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증명서에 수록되어 있던 정보를 전자적인 정보를 변환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컴퓨터라 할 수 있는 IC칩에 수록하는, 정보의 통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는 통합되는 정도만큼 침해의 위험성도 따라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전자주민카드에는 어떤 사람에 관한 개인적인 사항이 대부분 수록될 계획인데다, 전자화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증기능이 주민등록증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분실, 도난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을 위험과 불이익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위험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도입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설사 일정한 국민적 토론과정 또는 국회에서의 깊은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전산망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장치, 전자주민카드 고유의 기술적 문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자격조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을 별도의 통합입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도입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빠져나간 주소는 이한영씨를 살해하는데 사용되었다. 지난 3. 19.에는 구청의 청소과 직원이 구청 전산망을 통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적 등을 빼내 삼부름센타에 넘겨 주었다. 정부가 국가전산망의 보안은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고작 구청의 청소과 직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신상

정보를 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주민등록전산망에는 4,000여개의 읍면동에 15,000여대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고,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40여개 지부와 출장소에 설치된 수백대의 단말기와 의료보험연합회의 420여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설치된 수천대의 단말기와 연결될 것이며, 경찰청의 각 파출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찰청 면허관리망과도 연결되며 교통경찰에게 지급될 무선판독기까지 전자주민카드 전산망에 연결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각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하급 공무원들까지 전자주민카드 전산망에 접속하여 각자의 권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봐 볼 수 있는 시스템에서 보안을 맡하는 것은 차라리 우스운 일이라 하여야 한다.

나. 우리 단체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필연적으로 대량유출될 것이라는 점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이미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 의견서에서는 더이상 부언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내무부가 위 법률에 정한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만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여러가지 입법적인 미비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거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한영씨 주소유출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수집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수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 위 법률에 반함이 분명하다. 위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개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데 주민등록정보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경찰이 자유롭게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여권관리전산망도 주민등록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주민등록 전산망을 여권발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권발급민원이 크게 개선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그 보유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여권발급담당자가 언제든지 주민등록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하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그 수집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설사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목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상호 이용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전국 읍면동, 각 구청, 시청, 각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뿐만 아니라 여권발급의 행정기관에서도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유출시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정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면, 위 법률을 전산망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사전에 전산망연결계획을 국민이나 국회에 알리고 국민의 공동토론이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였을 것이다.

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정보를 의료보험망, 국민연금망, 운전면허망에서 기초정보로 사용하거나,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를 상호연동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는 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상호이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든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도입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위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1997. 3. 21.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공동대표 김진균·김창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  
**국회 내무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의적 자료실		번호	기호
98	3/3	B4-1	41

어제(11월 13일) 국회 내무위원회는 기습적으로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부부가 수정 세시한 것으로서, 통합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 주민등록등록부 수록사항, 병역사항, 지문 등을 수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부에서는 수정안이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기 때문에 민간의 전자주민카드 반대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변해 왔지만, 전자주민카드의 실질적인 위협의 핵심은 컴퓨터 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했던 것은 그 수록내용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전자식으로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전자주민카드의 본질적인 위협 요소는 그대로 두고, 일부 소항만을 삭제한 것으로서는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 내부위원회에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법안이 통과된 것은 내부위원회의 기본적인 국정운영 세력과 통상인 수준에서의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을 전자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전자적 국민통제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디 이 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과 기술영향평가 등의 충분한 검토작업, 국민여론 수렴과정과 합리적이고도 양심적인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통해 부결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며,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은 기정 사실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통합전자주민카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내부위원회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또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사회의 여러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수령을 거부하는 네규모 국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1997년 11월 14일

大主教 人權委員會

委員長 : 金亨泰 編護士

문의 : 02 777-0643(천주교 인권위원회)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11. 14.

수 신 각 참여단체 담당자

발 신 김기중(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 제 목 긴급 확대회의

1. 이미 알려드린대로 상황이 급박합니다. 어찌 해 볼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 하루와 월요일 오전뿐입니다.

2. 이에 긴급히 확대회의를 개최하니, 다른 일에 우선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간 : 오늘(11. 14.) 18:30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 723-5300)

참여범위 : 참여단체 담당자 및 집행부 구성원

(가능한 사람은 모두 참여해서 이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끝.

## 국회 내무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하게 알려드립니다.

어제(11월 13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여 의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반대했던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기정사  
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긴급  
하게 오늘(14일) 12시(징오)에 명동성당 입구에서 국회 내무위원회의  
결성을 규탄하고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위(피켓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급히 성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 : 천주교 인권위원회(02-777 0643)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인권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기독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문의 : 참여연대 박원석 723-5300)

제 목 전자주민카드 도입 항의행동 속보

날 째 1997.11.15(총 1쪽)

### 1. 시민사회단체공대위 신한국당 이희창총재 면담요구 농성중 2. 11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앞 항의집회 예정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긴급항의행동 속보 -

1. 전자주민카드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항의와 철회를 위한 긴급 행동의 일환으로 11월 15일 오전 11시 현재 신한국당 이희창 총재실에서 시민사회단체공대위 대표단이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2. 현재 이희창 총재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공대위 대표단은 김기중(변호사, 공대위 집행위원장),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3.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공대위는 11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비롯하여 혐소송법등 잇따른 법안 개악을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 바랍니다. 끝

97. 11. 15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2/3 밤을 빼놓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연민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 수학 노동 심부화시연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신부인권운동 주한언행 심부연대SING  
한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기관다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기중 567-2316)

제목 : 전자주민카드 예산 우선삭감 촉구 논평

일시 : 1997년 12월 2일 (총 2 쪽)

### '전자주민카드' 대체로는 합당한 설명서

#### 설명서

**대통령은 주민등록법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하고,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하라.**

- IMF의 재정축소 요구에 따른 설명서 -

현재 대한민국은 파산직전에 몰려 있고,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형편이다. IMF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긴축재정이며, 긴축재정의 범위에 관하여 IMF는 7조원 가량의 예산을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다. 어찌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냉정히 검토해서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우선 정신을 가다듬고 해야 할 일은 진바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는 국채사업을 엄밀하게 선정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예산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본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총 2,7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일부가 추산한 예산의 규모는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만큼 이 추정예산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사업은 다양한 첨단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산하였기 때문에, 경부고속철도사업처럼 그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관계부처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관한 예산을 우선하여 삭감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시기가 1998년 12월로 늦추어졌기 때문에 1998년도 전자주민카드 관련예산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건축체정은 앞으로 2-3년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전자주민카드를 실제로 발급하기 시작하는 1999년에는 1,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보류하고 1998년도의 관련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1999년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11. 17. 국회본회 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부의 부처이기주의에 휘말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우리는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실험적인 제도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또 수년간 시행을 연기하거나 제도 자체를 재검토 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자주민카드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다른 기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수월할 것으로, 대통령이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를 보류하고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관련예산을 우선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끝.

## (2) 품격 향상

한국인은 그들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五音 '한국' 종류 '한국' [한국] 품위)

## 국제화부 (a)

한국인은 그들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五音 '한국' 종류 '한국' [한국] 품위)

### ① 품위 향상

<행복>

한국인은 그들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五音 '한국' 종류 '한국' [한국] 품위)

<행복>

한국인은 그들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五音 '한국' 종류 '한국' [한국] 품위)

<행복>

한국인은 그들의 품위를 높이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五音 '한국' 종류 '한국' [한국] 품위)

<행복>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종로서 기자실, 시민·사회단체

발신 : 공동위 (문의: 참여연대 이대운 723-5300)

일자 : 1997. 11. 18

**성명서**

**선거로 표류하는 국정,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

1968년 11월 18일 국민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오늘로  
만 29년째를 맞게 되었다. 일제가 시작하고 3공화국 군부통치하에서 정착된 주민등록  
제도는 이른바 문민시대인 지금에도 141가지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소유하게  
됨으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국민 감제등록제도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 11월 17일 국회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민  
상당수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전자  
주민카드가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고, 정보독점으  
로 인해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상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왔다. 특히 정보주권 보호 제도나 관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전자주  
민카드가 야기할 '경찰국가'와 같은 국민통제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증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단 한가지라도 개  
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제가능성을 현저하  
게 높인 세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오히려 주민등록법의 '개악'을 가져왔  
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가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 염친난 여파를 가져온 새로운 제도를 신중한 검토없이 개악처리한데  
대하여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론 수렴없이 급박하게 통과된 이 법안은  
논란중인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선거정국이 가져온 야합정치, 표류국정의

대표적인 회생양으로서, 이처럼 중대한 국책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버린 이번 정기국회는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전자적 방식의 국민정보관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전자주민카드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제와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과 같은 기술영향평가제의 도입과, OECD 사생활보호지침의 준수, 충분한 논쟁, 그리고 여유있는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자주민카드제의 졸속 도입은 시민불복종운동을 야기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선거분위기를 둔타 통과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해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노력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며, 전자주민카드제의 문제점과 무용성을 넓리 홍보하고, 사생활보호제도의 도입과 정보주권의 확립, 기술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위해서 광범위한 대중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경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97. 11. 18.

###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KNCC인권센터인권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정보  
를위한시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률소비자  
연맹 열린사회시민연합 우편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  
교인기자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보도자료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생활과학부 또는 정보과학 담당기자 · 사회단체  
**발** 신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공동집행위원장 이대훈(참여연대 협동기장), 김기중(민변, 변호사))  
**제** 목 보도자료 요청  
**날** 짜 1997. 10. 17.(총2쪽)

### 성명서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용이용을 당장 중단하라 -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본 공대위는 그동안 전자적 국민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전자적 국민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국가기간전산망을 악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동안 국가기간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행정기관들 사이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공동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함께 해 왔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0월 15일에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충조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청와대, 검찰, 법무부, 외무부는 물론이고 서울시청에까지 지급하여 경찰전산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를 기관이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한 건수는 기무사 506만건, 안기부 212만여건, 검찰 665만여건 등으로 모두 1,522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보가 수록된 주민자료 조회도 614만건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경력조회, 주민조회,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가 가능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는 위낙 방대하여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형

사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성별, 직업, 학력, 생활정도, 배우자유무, 정신상태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들도 입력되어 있으며, 형사입건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차량관련 정보, 운전면허관련정보와 세대주, 본적, 지문번호 등의 주민등록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한정된 사람에 한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전산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은 당연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행정기관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단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없는 다른 기관에게 '전산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므로, 경찰과 검찰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경찰전산망을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부터 올 8월까지 전산망 침해사고는 192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126건은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 공공전산망에서 일어 났다고 하며, 지난 9월에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통신망의 관리적인 한국통신 국제전화교환소에 외국 해커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국방, 금융 등 주요 국가전산망의 경우에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효율적 운용이라는 명분하에 이른바 '정보연계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정보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상호 공동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그리고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가 여전한 현실에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이다.

우리는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전산망 관련 위법행위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전산화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산화사업,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화사업과 전산망 구축계획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사회는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은 전자적 감시체제의 두려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국가정보화사업은 결국 국가권력에 의한 전자적 국민감시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보 도 요 청 서

##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인권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즈음한 성명서

날 째 1997. 11. 17. (총 3쪽)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내무위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일부 국회의원과 내무부등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대”,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계획의 철회를 주장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의 낙선운동과 위헌법률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민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법률적, 물리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는 성명서를(별첨자료 참조)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동대표 김진균, 김창국

<별첨자료 1>

상황정리

- 11월 13일 오전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소위, 자민련측 참가자의 찬성으로 통과  
오후 내무위원회, 신한국당,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표결통과
- 14일 오전 공대위 성명서 발표  
12:00 명동성당앞 항의시위 (30여명 참석)
- 15일 10:00 신한국당 항의 방문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면담요청  
신한국당 내무위원장 면담  
12:00 자민련 항의방문
- 17일 12:00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장소 : 국회 앞(장기신용은행)

#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즈음한 성명서

지난 11월 13일 국회 내무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거센 반대여론에 부딛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의 독단적인 행위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공대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형사소송법 등 인권관련 주요법안의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의 개악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공대위는 지금이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14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소위 '초원복국집사건'의 사례와 같이 국민개개인의 주민등록정보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안기부 경찰의 공안전산망을 비롯하여 국가소유의 개인정보가 비밀리에 관리되는 등,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록 전자주민카드제도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내무부가 앞장서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추진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바에 의해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의 전산화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모두 무의로 뒤집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전격적인 국회 통과 시도는 그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대위는 행정편의와 국민감시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다. 주민등록정보의 유출, 신용카드위조, 국가기간전산망의 해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은 국민의 생활과 한국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일뿐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대위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에 대해 이들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아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둘째, 즉각적으로 위헌법률심판재청을 비롯한 법률적인 대응에 들입하며 셋째,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하며 넷째, 이후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법률적, 물리적 대응을 전개 할 것이다.

1997. 11. 17.

##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인권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  
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률소  
비자연맹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